

감사품질이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

정 용 수*

The Effects of Audit Service Quality on Litigation Risk

Jung Yong-Soo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audit service quality affects auditor's risk (auditor's industry expertise, audit fee, audit hours). As the Accounting Reform Law has been revised in the end of 2003, class action suit has been introduced beginning 2005.

It is hypothesized that an increase in litigation risk causes an increase in audit quality. The study contributes to audit research by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that auditors invest enough audit quality to avoid possible litigation risk. When litigation risks grow as a result of the overall enforcement of class action lawsuit, we expect auditors to cope with the possibility of litigation risk utilizing increased audit quality. This study provides an connective evidence of the relation between litigation risk and audit service quality.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박사수료

I. 서 론

2004년 회계개혁 관련 법안 개정으로 우리나라도 미국¹⁾과 거의 유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었다²⁾ 이와 같은 법적 제도와 규제장치가 도입됨으로써 국내기업과 감사인들은 거액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와 감사인들은 잠재적 소송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³⁾.

미국에서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이후에 미국의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의 빈도 및 비용이 크게 증가되었다(Beaver 1993; Kothari et al. 1988). 이러한 소송위험의 증가는 감사위험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 감사인의 명성훼손과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2001년 3건에 불과했지만 증권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급증하여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총 26건에 이르고 있다(금융감독원 2008). 따라서 국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인 소송위험 연구가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Palmrose(1986)는 Big8이 Non-Big8에 비해 감사인 소송건수가 적은 이유가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봄으로써 최초로 감사인 소송과 감사품질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⁴⁾ 이에 따라 감사품질이 낮으면 감사실패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감사실패는 곧 감사인에 대한 투자자나 채권자 등 기업 이해관계자의 소송확률을 증가시

- 1) 미국은 월드컴과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회계정보 투명성과 시장건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책임 및 처벌을 강화시킨 Sarbanes-Oxley Act(2002)를 제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증권집단소송비용, 회계시스템 개선비용, 감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 정부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등 소위 회계3법을 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치 의무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인 회계연구원의 설립, 동일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6년 교체 의무화, 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분기보고서제도의 도입, 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화, 피감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제한, 감사조서 8년 보관의무,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감사인 선임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부실감사 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사외이사제도 도입 및 사업보고서에 대표이사확인서명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 3) Tillinghast survey(2002)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회계관련 정보의 부적절한 공시로 인한 소송이 전체 기업소송의 46.4%에 이르고 있으며, 회계관련 소송비용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4) 그 이후로 피감기업의 특성(Pratt and Stice 1994), 제량적 발생액(Heninger 2001), 감사보수(Simunic and Stein 1996; 이경태 등 2007), 감사시간(지현미·문상혁 2006) 등과 감사인 소송위험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킬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감사품질이 감사인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그런데 독립변수인 감사품질과 종속변수인 감사인 소송위험 모두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이에 따라 감사품질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전문성,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Big4 제휴여부를 포함하여 측정한다. 감사인 소송위험은 외부전문가가 산출한 피감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로 측정하였다. 이경태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피감기업의 피소가능성은 피감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뿐만 아니라 감사보수 책정에도 반영되며 감사보수는 감사인 소송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가설을 도출할 것이며, 제Ⅲ장에서는 연구설계를 하며,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과 그 결과를 해석하고, 끝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가설설정

1. 선행연구검토

가. 감사인 소송위험

Palmrose(1986)는 1968년부터 1985년까지 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사건자료를 이용하여, Big8 회계법인의 명성효과와 소송발생비율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Big8의 소송발생비율이 Non-Big8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은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감사품질에 대해 부정적인 신호를 제공하게 되어 회계법인의 명성을 해칠 수 있게 되므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송발생확률을 낮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Pratt and Stice(1994)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피감기업의 재무상태, 자산구성, 매출액성장률, 지분의 시장가치, 주가수익률 분산 등의 요인이 감사인의 피감기업에 대한 소송위험 판단, 중요오류위험을 수용가능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감사증거량 및 감사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피감기업의 재무상태가 나쁠수록 소송위험, 감사증거 및 감사보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자산구성은 재무상태에 비해서는 상관성이 약하지만 재무상태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eninger(2001)는 기업의 이익조정과 감사인 소송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감사인 소송위험이 이익조정의 척도인 비정상발생액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김평기(2004)는 감사위험접근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위험 통제과정을 고려하여 각 감사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감사인 소송위험모형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평기 등(2004)은 감사인의 소송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한 바 있다.

지현미·문상혁(2006)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소송위험이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소송위험의 측정치로 Simunic(1980) 등의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손실유무, 부채비율, 총자산이익률, 당좌비율, 감사의견 등을 이용하였다.

Core(2000)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기업 소송위험의 사전적 측정치(ex ante litigation risk)임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료와 소송위험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소송위험이 기업의 일반적인 사업위험과 함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분석결과,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기업의 높은 사업위험과 관련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송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한 지배구조를 지닌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높게 부담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경태 등(2007)은 보험사나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피감기업의 소송위험에 관해 전문적으로 산출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신용평가등급 등 계량화된 소송위험의 사전적 측정치를 이용하여 소송위험과 감사보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소송위험의 대용치인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감사서비스의 본질은 피감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보수는 적정성 인증을 위해 투입된 감사자원의 함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능이 실패로 귀착될 때에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이경태 등 2007).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서 회계법인 역시 부실감사로 인해 제소당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회계법인은 잠재적 소송으로부터 유발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감사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기에 앞서 각 기업이 지닌 소송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감사보수에 반영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감사계약을 통해 결정된 감사보수는 피감기업이 노출된 소송위험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노출된 소송위험에 대한 담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감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피감기업의 소송위험을 반영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의 소송위험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감사인 소송위험의 측정치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피감기업의 임원배상책보험료를 이용하였다.

나. 감사품질

감사품질이란 특정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재무제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할 확률과 이러한 발견사항을 보고할 확률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DeAngelo 1981). 그런데 감사품질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에 대한 다양한 대용치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인의 규모나 명성(DeAngelo 1981; Johnson and Lys 1990; Simunic and Stein 1987; 이효익 1990), 감사인의 산업전문성(Shockley and Holt 1983; 정문종·이재맹 1996), 감사시간과 감사보수(Francis 1984; Palmrose 1986, 최관·백원선⁵⁾ 1998), 감리지적 여부⁶⁾(정석우 1999), 전기손익수정항목(김문철·황인태 1998), 비적정의견 표명성향(나종길 등 2001), 재량적 발생액(DeFond and Subramanyam 1998; 나종길·최관 2003), 이익반응계수(Ghosh and Moon 2005⁷⁾)를 사용하였다.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에서 감리지적 유무는 감리대상이 되었으나 지적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고, 전기손익수정손익은 그 내용이 대부분 법인세 추납이나 환급과 관련된 항목이어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 비적정의견⁸⁾은 전체 감사의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기 어렵다(신용인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변수로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BIG4 제휴법인 여부를 사용하여 소송위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⁹⁾

5) 감사투입시간의 경우 Big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6) 감리결과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인 규모차이가 감사품질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정석우 1999; 박종성 1999).

7) 이익반응계수(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RC)로 측정한 이익의 질이 계속감사기간과 양의 관련성을 보여 계속감사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사품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8) 감사품질의 측정치로서 감사의견을 사용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 적정의견을 받는 비중이 2002년 97.5%, 2003년 96.7%, 2004년 97.2%이므로 비적정의견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적은 수의 비적정의견은 실증분석을 위주로 하는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에서 관찰치의 수가 적어서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비적정의견도 그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계량적인 감사품질의 측정치로 사용하기 쉽지 않다.

(1)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채택하는 견해는 해당 전문산업에 속한 기업을 감사할 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더 높은 품질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에 따르는 것이다(O'Keefe et al. 1994; Balsam et al. 2003).

O'keefe et al.(1994)은 산업별 전문감사인들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들에 비해 회계감사기준에 부합되는 감사를 수행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Gramling et al.(2001)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의 회계이익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보다 정확하다고 보고하였다. Balsam et al.(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피감사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작고 이익반응계수인 ERC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rishnan(2003)은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재량적 발생액에 기초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이익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감사인의 의도에 의해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한 경우든 감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특정산업에 대한 감사경험에 의하여 지식이 축적된 경우든 산업별 전문감사인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에 비해 결과적으로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부분 선행연구는 피감기업의 자산총액으로 측정된 시장점유율을 산업전문성의 측정치로 사용하고 있다. 즉, 특정 연도별-산업별 전체 감사대상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해당 회계법인인 감사한 기업의 비중을 산업별 전문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문중(1997)은 감사품질 측정치로서 감사규모, 시장점유율, 평판 등을 제시하였다. 나종길·최기호(2004)의 연구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인 감사인, 시장점유율 1위와 2위인 감사인,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동시에 2위와의 차이가 10% 이상 격차를 보이는 감사인, 피감기업의 수, 각 산업 내 시장점유율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2)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보수가 경쟁적으로 결정되는 시장에서는 우수한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감사인이 그렇지 못한 감사인 보다 더욱 많은 감사보수를 받을 수 있다. 감사인간에 감사능력이 동일하다면 재무제표감사에 더욱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할 것이다(최관·백

9)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감사품질 변수를 이용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많이 이용한 재량적 발생액은 배제하였다.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로는 Myers et al.(2003), Ghosh and Moon(2005), 나종길·최기호(2005), 임영덕(2006), 신용인·최관·조현우(2007), 권수영·임영덕·마희영(2008) 등이 있다.

원선 1998).

감사보수는 감사인 선임시에 결정되므로 재무제표감사 이전에 확정된 감사품질 측정치인 반면에 감사시간은 감사인의 감사노력이 반영된 감사품질의 측정치이다(박종일 2006).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을 나타내는 대용치인 이유는 감사보수가 높은 기업에서 재무제표 감사 시에 감사인의 추가적인 감사노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감사과정에서 감사인의 노력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과대보고이익은 억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사인은 소송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사이에는 상충관계도 존재한다. 감사인이 선임되고 감사보수가 결정되면 감사인은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경제적 감사가 되길 원한다.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극대화를 원하지만 감사시간은 최소한으로 투입하기를 원한다.

최관·백원선(1998)은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의 감사보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반면, 감사시간에서는 Big6 제휴법인이 국내법인 보다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권수영 등(2005)은 감사보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Big5 제휴법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으며 이들 법인이 받는 감사보수 프리미엄은 국내법인에 비해 더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 이외에 Big5 회계법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감사품질에 대한 평판 그 자체에서도 연유한다고 보았다. 박종일(2006)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감사시간을 이용하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결정의 사외이사 특성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3) Big4 제휴여부

기업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높은 감사인을 선택하여 감사를 받는 까닭은 감사인에 대한 높은 평판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전달하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Wallace 1980).

투자자들은 감사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자신이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고자 한다. 따라서 감사품질은 감사인이 향후 직면하게 될 손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Dye 1993; Melumad and Thoman 1990). 투자자들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손해배상능력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회계법인일수록 향후 소송으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따라 대형회계법인은 소송에 대비해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게 된다(Palmrose 1986). 잠재적 소송비용의 존재는 대형 회계법인들에게 향후 손실을 대비하여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Simunic and Stein 1996).

많은 선행연구에서 Big4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더 높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DeAngelo(1981)는 분석적 연구를 통해 규모가 큰 감사인일수록 독립성이 더 높음을 주장하였다. Teoh and Wong(1993)에 의하면 Big4 감사인에게 감사받는 기업의 이익반응계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DeFond and Jiambalvo(1993)에 의하면 Big4 감사인이 Non-Big4감사인보다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저지하는 경향이 더 높음이 검증되었다. 또한 Non-Big4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4로부터 감사받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Becker et al. 1998). Allen(1994)은 Big4가 감사한 회계정보는 국공채의 등급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Big4 감사인의 품질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Beatty(1989)는 Big4가 감사한 신규상장기업의 저평가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Big4 감사인의 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Lennox(1999)는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형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높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가설, 즉 명성자본가설(reputation capital hypothesis)과 손해배상능력가설(deep pockets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대형회계법인은 명성의 훼손보다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할 가능성을 더 염려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해배상능력가설이 더 타당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감사품질에 대한 대용변수로서 감사인 규모나 명성을 사용하여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였다. 이익조정여부는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다.

김문철·황인태(1998)는 Big6, 국내대형법인, 합동회계사무소 사이에 감사품질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들 감사인에 따라 피감기업의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정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Big6와 합동회계사무소 사이, 국내대형회계법인과 합동회계사무소 사이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가설설정

지금까지 검토한 감사인 소송위험과 감사품질변수로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Big4 제휴여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Palmrose(1986)가 주장한 바와 같이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는 소송위험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산업전문성이 높을수록, 감사보수가 많을수록,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할수록, Big4제휴 감사인일수록 소송위험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감사인들이 높아진 소

송위험에 대비하여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소송위험의 감소로 연결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은 저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하위가설1 : 높은 산업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은 낮은 산업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하위가설2 : 많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은 적은 감사보수를 받는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하위가설3 : 많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감사인은 적은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하위가설4 : Big4제휴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에 비하여 소송위험이 감소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표본선정

본 연구에서의 표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1)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기업
- (2) 금융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3) 사업보고서를 통한 감사품질 관련 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 (4)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 (5) 상장협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한 기업

연구대상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다. 조건 (1)은 표본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조건 (2)는 동일한 조건을 지닌 산업에 속한 표본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 (3), (4), (5)는 연구모형을 충족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종표본은 총 1,075개이다.

자료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임원배상책임보험료, 담보제공 여부 및 이사회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수작업으로 수집하였고, 재무제표자료는 상장협의 데이터베이스(TS 2000) 및 Fn-guide에서 추출하였다. <표 1>은 표본기업의 산업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업종은 한국신용평가의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표본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가 특정 산업에 의해 도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1> 표본기업의 산업분포

업종수	업 종	표본 수	%
1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60	5.5
2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	0.6
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2	8.4
4	기타 ·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7	1.6
5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0	3.9
6	섬유제품제조업	43	11.6
7	음 · 식료품 제조업	127	9.4
8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03	6.8
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74	10.5
10	제1차 금속산업	115	2.7
1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30	1.4
12	코크스 ·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15	4.3
13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47	4.3
1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295	29
합계		1,075	100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인 감사품질요인이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begin{aligned}
 ALR = & \beta_0 + \beta_1 AQ + \beta_2 FRN + \beta_3 INVREC + \beta_4 ROA + \beta_5 LEV \\
 & \quad (-) \quad (-) \quad (+) \quad (+) \quad (+) \\
 & + \beta_6 SIZE + \beta_7 FIR + \beta_8 OPN + \beta_9 FOREN + \varepsilon <식 1> \\
 & \quad (+) \quad (-) \quad (-) \quad (1)
 \end{aligned}$$

단, ALR : 소송위험 - 피감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총자산*1000

AQ : 감사품질 I - 산업전문성: 총자산의 제공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1위인 감사인
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5%이상인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감사품질 II - 감사보수: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보수의 자연로그

감사품질 III - 감사시간: 피감기업에 대한 감사시간의 자연로그

감사품질 IV - BIG4 : Big 4 제휴법인이면 1, 국내법인은 0

FRN: 총매출액에서 해외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INVREC: 총자산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ROA: 피감기업의 평균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과 기말총자산의 평균값)

LEV : 부채비율- 총부채/ 총자산

SIZE : 기업의 규모-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FIR: 초도감사기업이면 1, 아니면 0

OPN : 감사의견- 적정의견이면 1, 비적정의견이면 0

FOREN: 외국인지분율

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 감사인 소송위험(ALR)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 위험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사후에 기대되는 소송비용과 그 기업의 피소확률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보험사가 산출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보험사가 기업의 소송위험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이익이 모두 반영된 하나의 수치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는 일반 기업보험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 변수, 기업의 업종, 총자산, 부채총액 및 회사임원총수 등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기업의 소송위험을 떠안을 이유가 없으므로, 위험평가의 전문가인 보험사가 산정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라는 수치는 기업의 잠재적인 소송위험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차별적인 값이라 하겠다(Core 2000; 이경태 등 2007). 본 연구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감사인 소송위험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나. 독립변수 : 감사품질(AQ)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감사품질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용치를 이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근거에 입각하여 감사품질변수로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BIG4 제휴법인 여부를 사용한다.

(1)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감사품질 I)

대부분 선행연구는 피감사회사의 자산총액으로 측정한 시장점유율을 산업전문성의 측정치로 사용하고 있다. 즉, 특정 연도별·산업별 전체 감사대상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해당 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의 비율을 산업 전문성으로 보고 있다. 시장점유율은 시장점유율을 단순한 합계한 값과 시장점유율의 제곱근을 취한 값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식 2>에서와 같이 총자산액에 제곱근을 취한 값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Mayhew and Wilkins 2003; 나종길·최기호 2006). 이 경우, 단순 합계를 적용하는 방법이 갖는 약점인 자산 규모가 큰 특정 기업의 편의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MS_{ik} = \frac{\sum_{j=1}^{J_{ik}} \sqrt{A_{ijk}^{t-1}}}{\sum_{i=1}^{I_k} \sum_{j=1}^{J_{ik}} \sqrt{A_{ijk}^{t-1}}} \quad \text{<식 2>}$$

여기서, A_{ijk}^{t-1} : j 회계감사인의 고객인 k 산업에 속한 i 기업의 직전연도 총자산규모
 MS_{jk} : 시장점유율

(2) 감사보수(감사품질Ⅱ), 감사시간(감사품질Ⅲ), BIG4 제휴여부(감사품질Ⅳ)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피감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데 감사인의 감사보수금액과 감사시간에 각각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Big4 제휴여부는 Big 4와 제휴한 피감기업을 1, 그렇지 않은 피감기업을 0으로 둔다.

다. 통제변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기타 통제변수의 선정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관한 선행연구에 기초한다(Abbott et. al. 2003; 정영진 2005; 권수영 등 2005). 선정된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율, 수출비율, 외국인 지분율, ROA 등을 포함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총자산의 자연대수 값으로 연구모형에서 고려하지 못한 변수에 대한 대용치 역할을 한다.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의 비율(INVREC)은 기업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할 가능성이 높고, 부채비율(LEV)은 부채계약에 의한 이익조정의 개연성이 높아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이용하였다.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지배구조관련변수는 외국인지분율(FOREN)을 이용하였다.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해당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이세용 등 2005) 그 결과 소송위험이 낮아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4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8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매 3개 연속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이는 감사인으로 하여금 최소 3년 동안은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인 교체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에서 소신껏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개년 동일감사인 유지제도 하에서는 한 번의 계약체결로 3년간의 감사업무가 확보되기 때문에, 초년도에¹⁰⁾ 기존의 계속감사인보다 감사보수를 대폭 할인하여 줌으로써 신규 감사업무를 수임하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초년도감사 보수할인은 감사시간의 부족을 야기하여 감사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신용인 등 2007).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초도감사는 1, 그렇지 않으면 0을 부여하였다.

10) 본 연구에서, 현행 3개년 동일감사인유지제도하에서 3년 감사계약 첫 해 감사를 초년도감사라고 한다. 또한 초년도감사 중에서 감사인이 변경된 경우를 초도감사라고 하고, 감사인이 유지된 경우를 계속감사라고 한다.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에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소송위험 변수의 사전적 측정치인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평균은 4,888만원, 감사품질 대용치 중 감사보수의 평균은 9,648만원이며, 감사시간의 평균은 1,189시간이다.

전체매출 중 해외매출의 비중은 31%이며, 표본기업의 99%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총자산에서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은 31%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체 표본 중 13.8%의 기업이 초도감사기업이다.

<표2>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75%	중위수	25%	최소값
종속변수	소송위험	0.038	0.112	1.191	0.019	0.014	0.000
	임원배상책임보험료(원)	48,887,270	520024	995,000,000	24,709,720	10,962,521	0.000
독립변수 (감사품질)	산업전문성	0.438	0.496	1.000	1.000	0.000	0.000
	ln감사보수	18.138	0.543	21.933	18.342	18.064	17.797
	감사보수 (원)	96,467,281	174670	335,300,000	97,450,000	70,000,000	53,600,000
	ln감사시간	6.726	0.728	10.783	7.048	6.527	6.285
	감사시간(시간)	1,189	2602	48200	1220	835	593
	BIG4 제휴법인	0.742	0.438	1.000	1.000	1.000	0.000
통제변수	수출비중	0.307	0.279	0.978	0.553	0.268	0.024
	ROA	0.034	0.073	0.183	0.073	0.043	0.013
	재고자산매출채권비율	0.313	0.155	0.687	0.430	0.309	0.180
	감사의견	0.9908	0.095	1.000	1.000	1.000	1.000
	부채비율	0.400	0.170	0.844	0.513	0.384	0.280
	기업규모	19.254	1.085	24.901	19.915	19.108	18.469
	초도감사여부	0.138	0.345	1.000	0.000	0.000	0.000
	외국인지분율	0.097	0.113	0.679	0.146	0.054	0.006

<표 3>은 소송위험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제변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주요 핵심변수의 상관관계만을 나타내었다. 소송위험변수의 경우는 모든 감사품질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다른 감사품질변수와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TOL 값이 0.57~0.9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 수	소송위험	감사품질- 산업전문성	감사품질- 감사보수	감사품질- 감사시간	감사품질- BIG4 제휴법인
소송위험	1				
감사품질- 산업전문성	0.127 (0.0001)	1			
감사품질- 감사보수	0.113 (0.000)	0.096 (0.002)	1		
감사품질- 감사시간	0.096 (0.002)	0.136 (0.0001)	0.684 (0.0001)	1	
감사품질- BIG4제휴법인	0.10154 (0.000)	0.0759 (0.012)	0.270 (0.000)	0.352 (0.000)	1

<표 4>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칼럼A는 본 연구에서 대용치로 사용한 감사품질변수 모두를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이고, 칼럼B, C, D, E는 각각의 감사품질변수들이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결과이다.

먼저, 칼럼B는 산업전문성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결과인데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산업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에 의해 고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은 소송위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ROA가 높을수록, 초도감사일수록 소송위험은 높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외국인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외국인지분율이 높을수록 소송위험에 덜 노출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수출비중이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작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입증되었다.

칼럼C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결과이다. 감사보수관련 선행연구는 모두 소송위험을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의 결정요인의 하나로 취급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와 반대

로 감사품질을 소송위험의 결정요인으로 보았다. 연구결과는 감사보수가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가설2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인데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ROA가 높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D는 감사시간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결과이다. 감사시간이 소송위험의 결정요인인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감사시간의 경우도 감사보수와 동일하게 감사시간이 많이 투입될수록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위가설3의 예상과는 상반되는 결과인데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ROA와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실증분석결과

변 수	기대 부호	소송위험				
		칼럼 A	칼럼 B	칼럼 C	칼럼 D	칼럼 E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계수값
절 편	?	-0.3327 (-2.28)	0.1123 (1.41)	-0.3441 (-2.60***)	0.1502 (1.86)	0.1563 (1.92)
산업전문성	-	-0.0264 (-3.89***)	-0.0277 (-4.07***)			
감사보수	-	0.0433 (4.05)**		0.0427 (4.43***)		
감사시간	-	-0.0017 (-0.25)			0.0141 (2.39**)	
BIG4 제휴법인	-	-0.0183 (-2.19**)				-0.0186 (-2.22**)
부채비율	+	0.1072 (4.52***)	0.1344 (5.80***)	0.1188 (5.05***)	0.1293 (5.48***)	0.1297 (5.50***)
기업규모	+	-0.0220 (-4.11***)	-0.0055 (-1.38)	-0.0197 (-3.78***)	-0.0109 (-2.29**)	-0.0070 (-1.70*)
감사의견여부	-	-0.0346 (-0.99)	-0.0234 (-0.66)	-0.0443 (-1.26)	-0.0383 (-1.08)	-0.0392 (-1.11)
수출비중	-	-0.0346 (-2.75***)	-0.0350 (-2.82**)	-0.0389 (-3.14***)	-0.0315 (-2.49**)	-0.0337 (-2.69***)
ROA	+	0.1344 (2.61***)	0.0876 (1.72*)	0.1211 (2.35**)	0.1018 (1.97**)	0.1001 (1.94**)
재고자산과 매출채권비율	+	-0.0297 (-1.20)	-0.0284 (-1.14)	-0.0430 (-1.74*)	-0.0399 (-1.60)	-0.0305 (-1.22)
초도감사여부	-	-0.0150 (-1.54)	-0.0191 (-1.96**)	-0.0125 (-1.29)	-0.0134 (1.38)	-0.0119 (-1.02)
외국인지분율	-	0.0393 (1.08)	0.0892 (2.54***)	0.0585 (1.61)	0.0944 (2.68***)	0.0914 (2.58***)
F 값		7.65	7.41	7.77	6.15	6.06
Adjusted R^2		0.079	0.058	0.061	0.049	0.048
표본 수		1075	1075	1075	1075	1075

주) *, **, *** 는 각각 유의수준 0.1, 0.05, 0.01에서 유의적임.

칼럼E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Big4 제휴여부를 사용한 결과이다. Big4 제휴법인일수록 소송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부채비율, ROA, 외국인지분율 모두 각각 높을수록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칼럼A는 모든 감사품질의 대용치와 소송위험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

합분석에서는 감사시간의 경우는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나머지 감사품질변수들인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Big4제휴법인인 감사인 소송위험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비중이 낮을수록, ROA가 높을수록 감사인 소송위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한층 높아진 외부감사인의 소송위험에 감사품질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사인 소송위험은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이용하였으며, 감사품질 변수로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Big4 제휴여부를 대용치로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감사품질 대용치에 따라 소송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높을수록, BIG4 제휴법인인 경우에 감사인 소송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감사인 소송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독립변수)이 아니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사인 소송위험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일 개연성을 보여 주었다. 한편, 한편,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수출비중이 낮을수록, ROA가 높을수록 감사인 소송위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높을수록 감사인 소송위험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품질 특히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Big4 제휴여부에 따라 감사인 소송위험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이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감사품질과 감사인 소송 관련 주제는 그 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온 감사인 산업전문성 변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삼아 이 변수가 감사인 소송위험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는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소송위험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그 논리적 근거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과 축적된 소송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권수영, 김문철,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30권 제4호): 47-76.
- [2] 권수영, 임영덕, 마희영. 2008.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계속감사기간과 감사품질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강제교체 감사인의 감사보수 분석. 회계저널(제17권 제2호): 1-38.
- [3] 김문철, 황인태. 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23권 제2호): 1-26.
- [4] 김평기. 2004. 감사위험접근과 감사인의 소송위험 결정모형. 경영교역저널(제5권): 45-60.
- [5] 김평기, 설성진, 한경훈. 2004. 감사인 소송위험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의 방향. 경영교육저널(제5권): 61-82.
- [6] 나종길, 최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제28권 제1호): 1-31.
- [7] 나종길,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제26권 제3호): 51-89.
- [8] 나종길, 최기호. 2004. 회계발생의 수준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29권 제1호): 179-205.
- [9] 나종길, 최기호. 2005. 회계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이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제41호): 261-298.
- [10] 나종길, 최기호. 2006. 회계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과 회계감사보수와의 관계. 회계학연구(제31권 제1호): 33-66.
- [11] 박종성. 1999. 피감사회사 특성과 감사인 특성을 이용한 감리지적 예측. 회계학연구(제24권 제1호): 1-32.
- [12] 박종일. 2006. 감사위원회 특성과 감사노력 간의 관계, 회계와 감사연구(제43호): 119-154.
- [13] 신용인, 최관, 조현우. 2007. 초도감사 보수할인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제32권 제1호): 173-207.
- [14] 이경태, 손성규, 최종원. 2007.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제16권 제1호): 53-79.
- [15] 이세용, 송혁준. 2005. 감사보수 자율화 이후 감사보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비감사서비스와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제30권 특별호 제1호): 239-270.
- [16] 이효익. 1990. 감사인의 교체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자유수입제도하에서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11권.

[17] 임영덕. 2006. 계속 감사기간과 감사품질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제31권 제3호): 183-213.

[18] 정문중. 1997. 대리인 비용, 사적정보의 문제 및 기타 기업특성과 기업의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제22권 제4호): 91-122.

[19] 정문중, 이재맹. 1996. 회계감사 품질대응치와 산업별 전문감사인: 우리 회계감사 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제5권): 239-274.

[20] 정석우. 1999. 감리결과의 분석과 회계감사의 품질. 한국회계학회 1998년 하계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395-416.

[21] 정영진. 2005. 감사위원회 특성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제41호): 145-166.

[22] 지현미, 문상혁. 2006. 소송위험위 감사시간과 감사인의 보수주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연구(제43호): 311-336.

[23]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제23권 제2호): 49-75.

[24] Abbott, L. J., Parker, S., Peters, G. F. and Raghunandan, K.,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audit fees,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 17-32.

[25] Allen, A., 1994. The effect of large-firm audits on municipal bond rating decision.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3(1), 115-125.

[26] Balsam, S., J, Krishnan and J. S. Yang, 2003.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Earnings Quality.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71-97.

[27] Beatty, R. P., 1989. Auditor reputation and the pricing of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Accounting Review (October): 693-709.

[28] Becker, C., M. DeFond, J. J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29] Beaver. W. H., 1993. Conservatism. Working paper. Stanford university.

[30] Core, John E., 2000. The Directors' and Officers' Insurance Premium" an outside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31] DeAngelo, L. E., 1981. Auditor Independence, "Low-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13-127.

[32] DeFond, M., Jiambalvo, J., 1993.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ve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9: 415-310.

[33] DeFond, M. and Subramanyam, K. R.,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5: 35-68.

[34] Dye, R., 1993. Auditing standards, legal liability, and auditor weal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5), 887-914.

[35] Francis, J.,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actices: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33-151.

[36] Ghosh. A., and D. Moon, 2005. Auditor Tenure and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80: 585-613.

[37] Gramling, A. A., V. E. Johnson and I. K. Khurana, 2001.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 Working paper. Georgia Stat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38] Heninger, W. G., 2001. The Association Between Auditor Litigation and Abnormal Accruals. *Accounting Review*(January).

[39] Johnson, W. B. and T. Lys, 1990.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Evidence from Voluntary Auditor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2: 281-308.

[40] Kothari. S. P., T. Lys, C. W. Smith and R. L. Watts, 1988. Auditor Liability and Information Disclosure.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e* 3(Fall): 307-339.

[41] Krishnan, G. V., 2003. Does Big 6 Auditor Industry Expertise Constrai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upplement): 1-16.

[42] Lennox, C. S., 1999. Audit quality and auditor size: An evaluation of reputation and deep pockets hypothese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26 (7 - 8): 779 - 805.

[43] Mayhew, B. and M. S. Wilkins, 2003. Audit Firm Industry Specialization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 Evidence from Fees Charged for Firms Going Public.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2: 33-52.

[44] Melumad, N. and Thoman, L., 1990. On auditors and the courts in an adverse selection sett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8 1: 77 - 120.

[45] Myers, J., L. A. Myers and T. C.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the Auditor-

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 779-800.

[46] O'keefe, T, D. Simunic, and M. Stein, 1994. The Production of Audit Services: Evidence from a Major Public Accounting Fir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1-261.

[47] O'Keefe, T. B., R. D. King and K. M. Gaver, 1994. Audit Fees, Industry Specialization, and Compliance with GAAS Reporting Standard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3: 41-55.

[48] Palmrose, 1986.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audit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search* 24(Spring): 97-110.

[49] Palmrose,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97-110.

[50] Pratt, J., and J. D. Stice, 1994. The effect of client characteristics on auditor litigation risk adjustments, required audit evidence, and recommended audit fees. *The Accounting Review* 69(October): 639-656.

[51] Shockley, R. and R. Holt, 1983. A Behavioral Investigation of Supplier Differentiation in the Market for Audit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545-564.

[52]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61-90.

[53] Simunic, D. and M. Stein, 1987. Product Differentiation in Auditing : A Study of Auditor Effects in the Market for New Issues. The Canadian Certified General Accountant's Research Foundation.

[54] Simunic, D. and M. Stein, 1996. The Impact of Litigation Risk on Audit Pricing: A Review of the Economics and the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19-134.

[55] Teoh, S., Wong, T.,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Vol. 68 No.2 : 346-67.

[56] Tillinghast survey, 2002.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Survey, Tillinghast of Towers Perrin.

[57] Wallace, W. A., 1980. The Economic Role of the Audit in Free and Regulated Markets. The Touche Ross and Co. Aid to Accounting Education Program.